

고시

기안용지

도시계획국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 415	(전화번호 318)	전결규정	조항
처리기관	제2부시장	시	장	전결사항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김영	협	법무국장(리안결재)
	도시계획과장	김영		시안과장
	가로계획과장	김영		도시관리과장
		김영		
기안책임자	이평재	조근조	조	1973. 6. 1
경유 수신 참조	죽안참조	발신	결재	1973. 6. 19 시장실
제목	도시계획소로 변경			

제1안

수신 내부결재

1. 시내외 도로 아전동 지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확정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별첨 목록의 내용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도시 제123호(73.4.4)로
정관 위임 사항에 따라 별안과 같이 변경처리 하피
2. 본부장은 신설처리하는 도로(사유)와 폐도처리 하는

정서
관인
발송

1. 당시 관내 도시계획 사항이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관련부칙 제 123 조 (73. 4. 4) 에 따라 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 부 처 고시문사본 및 도면

제 4 안

수 신 총무국장관 (서울시:공보실장)

발 신 시장 (과장)

제 목 관(시)보개제 의회

1. 다음과 같이 관(시)보개제 의회 하의 관(시)보이 개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개제 구분 : 고시

나. " 건명 : 도시계획으로 일부 변경.

다. 법 규 근거 :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첨 부 고시문사본 2매

제 5 안

수 신 마포구청장

발 신 시장

제 목 등 권

1. 귀구 관내 도시계획 사항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리 관계 도면 정리하는 등시 등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도시계획 업무 취급에 참고 있도록 할것.

첨 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제 6 안

수 신 시면과장

발 신 과 장

제 목 등 권

1. 당시 관내 도시계획 사항이 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리 열람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제7안

수신 관재과장

발신 과장

제목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유재산 교환조치 취회

1. 도시 45-2326 (72. 12. 26) 및 관재 1261-826 (72. 12. 30) 에 관련입니다.

2. 시내 마포구 아현동 617-40 호 번지앞 도로가 사유 재산 (신권이 변경된 계획년대로 조사 완료하였음) 과 사유 재산 (신권이 정물하고 있음) 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변경 도로 사용면 도면과 같이 고시되었기 후보하의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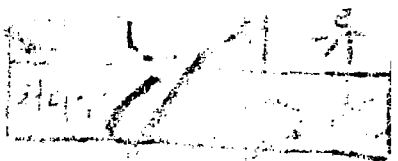
- 첨부 1. 고시문 사용면 도면
- 2. 교환신권서

제8안

수신 시내 마포구 아현동 617-15 김 성 철.

제목 등 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계획 변경 및 도로 교환 신청에 대하여 우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귀하의 과 같이 변경 되었으며 ~~이~~ 그리하시기 위하여 도로 교환에 관한 사항은 조사 검토상 상당한 시일이 요하겠으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答



수 신 : 서울특별시
 참 조 : 도시계획과장
 제 목 : 도토변경 및 사유재산 교환도로 준공개

1. 도시 415-068 (1973.1.24.) 와 관련 입니다.
2. 귀하의 혁신도시 415-068 호 에 의거 본(인) 도시 내에 ~~또~~기설을 준공 하였읍기 보고 하나이다.
3. 도시 415-068호 (1973.1.24.) 4항에 의거 신설한 도로(사유) 와 폐도코저하는 도로(사유) 와 교환하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4. 관계 법령상 교환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귀의에 순응 하겠읍니다.

첨부 1. 도토준공 현황사진 1매

1973.4.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17-15)

성 섭



서울특별시	전공	승인
도시계획과	김수	
검수	036	결
번호	20	일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도시계획국장
 제 목 도로변경 및 사유지산교환도로 착공계

1. ~~의사~~ 415-068호 (1973. 1. 24)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의견 ~~의사~~ 415-068호 에 의거 본인 도지내
 에 도로개설을 착공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1973.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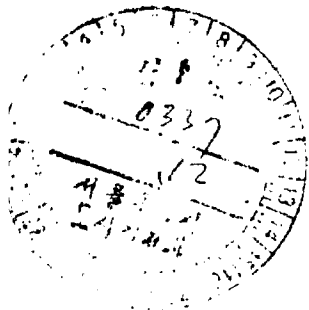
- 첨부 1. 설계도
 2. 공사비 결세서
 3. 공문사본
 4. 현황사진

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7-15

김 성 섭

계	조경국장	재개발국장	가정복지국장	의역국장	합동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시도국장	시도국장	10리
70										



문서처리인	접수	서울특별시	선주	결정	승인
	일시	1973. 4. 11			
	접수인	OHK			원 일

2 430000. E.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新			新	陸	新

